

## 벤처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내규

### 가. 입학에 관한 내규

**제1조 (목적)** 이 내규는 대학원의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지원자격)** 대학원의 입학시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.

1. 석사학위과정
  - 가. 국내·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및 학사학위 취득예정자
  - 나. 기타 관계법령에 의거 대학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자
2. 박사학위과정
  - 가. 국내·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및 석사학위 취득예정자
  - 나. 기타 관계법령에 의거 석사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자

**제3조 (입학절차)** 대학원의 입학절차는 다음과 같다.

1. 입학지원서류 제출
2.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(개정 2015. 1. 26)
3. 입학사정
4. 합격자 발표
5. 입학등록

**제4조 (지원서류)** 대학원 입학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소정의 기일 내에 전형료와 함께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석사학위과정
  - 가. 입학원서(소정양식)
  - 나. 대학졸업증명서(졸업예정증명서)또는 학력 인정서
  - 다. 대학 전학년 성적 증명서
  - 라. 재직 및 경력 증명서(특별전형 자에 한함)
  - 마. 사진(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3cm×4cm) 5매
2. 박사학위과정
  - 가. 입학원서(소정원서)
  - 나. 대학 및 대학원 졸업증명서(졸업예정 증명서)
  - 다. 대학 및 대학원 성적 증명서
  - 라. 재직 및 경력 증명서
  - 마. 사진(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3cm×4cm) 5매

**제5조 (시험과목 및 합격자 사정기준)** 대학원 입학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. (개정 2015. 1. 26)

1. 서류심사 :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입학할 공식적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며 점수화하지 않는다. (개정 2015. 1. 26)
2. 면접 : 학술연구의 능력과 적성, 인성, 지원학과(또는 전공)와 관련된 분야에 해당하는 전문지식 및 응용능력 등을 심사하며 합격기준은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으로 한다. (개정 2015. 1. 26)

**제6조 (면접위원)** 면접위원은 각 학과 전공별 3인 이상의 교수로 구성한다. (개정 2010. 3. 1)

**제7조 (과목별 배점 및 합격자 사정기준)** <삭제 2015. 1. 26>

**제8조 (특별전형)** ① 특별전형으로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서류 전형과 면접시험으로 합격여부를 사정한다. 단, 부득이한 경우에는 벤처대학원장의 승인 하에 서류전형만으로 대신할 수 있다. (개정 2014. 4. 21, 2019. 3. 1)

1. 국, 공, 사립의 전문연구소 과장급 이상(석사학위과정)
2. 산업체 및 산학연구소 5년 이상 실무 및 연구 경력자(박사학위과정)
3. 대학의 전임교원(박사학위과정)
4. 4급이상 공무원 또는 7년이상 중등교원 경력자(박사학위과정)
5. 이와 유사한 여타 분야의 전문가(석·박사학위과정)

② 외국인 지원자는 서류 전형 및 면접을 통하여 선발한다.

**제9조 (합격사정)** 대학원위원회에서 합격여부를 결정한다.

**제10조 (입학등록)** ① 최종합격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입학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.

② 입학 등록을 완료한자는 당해 학기 개학일로부터 학생의 신분을 취득하게 된다.

## 나. 등록에 관한 내규

**제11조 (목적)** 이 내규는 대학원 등록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12조 (등록금)** 각종의 등록에는 다음과 같은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(개정 2019. 3. 1)

1. 정규등록 : 입학금, 수업료
2. 학점등록 : 수강학점 수에 따라 정규등록금(입학금 제외)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 등록금을 납부해야 된다.

**제13조 (휴학자의 납입금)** 휴학자가 납부한 당해 학기의 등록금은 휴학자가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을 예납한 것으로 간주한다.

**제14조 (등록절차)** 학생은 대학원 교학팀에서 등록금 고지서를 교부 받아 소정 기일내에 등록금을 지정 장소에 납부하여야 한다.

## 다. 교과목의 개설과 수업에 관한 내규

**제15조 (목적)** 이 내규는 대학원의 교과과정에 의한 교과목의 개설과 수업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16조 (개설 교과목수와 수강 학생 수)** ① 학과별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전체 재학생 수에 따라 학과별로 매 학기 최대로 개설할 수 있는 교과목수와 학점수는 다음과 같다.(개정 2019. 3. 1)

재학생수	10명이하	11명~20명	21명~30명	31명~50명	51명이상
교과목수	5	6	7	8	9
학 점 수	15	18	21	24	27

② 개설된 교과목의 수강생이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폐강을 원칙으로 한다.(개정 2020. 3. 1)

③ 제2항에 따라 폐강이 예정된 과목이 운영되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교과목의 담당 전임교수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(신설 2020. 3. 1)

**제17조 (강사제청)** 각 학과 주임교수는 교과운영상 강사를 위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개강일 2개월 이전에 시간강사 제청서를 벤처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(2019. 3. 1)

**제18조 (수강 신청 및 변경)** ①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매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강 과목을 정하여 수강신청하고, 수강신청 한 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개강 후

3주일 이내에 지도교수와 학과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수강신청변경원을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. (개정 2015. 1. 26)

② 수강신청 한 교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개강 후 3주일 이내에 지도교수와 학과별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수강신청 변경원을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19조 (강의계획서)** 각 교과목 담당 교강사는 담당과목에 대한 강의계획서를 주별로 상세하게 작성하여 수강신청 1주일 전까지 Intranet에 입력하여야 한다. (개정 2010. 3. 1)

**제20조 (성적평가표 제출)** 각 교과목 담당 교강사는 종강 후 3주일 이내에 성적 평가표와 관련 자료를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.

## 라. 대학원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시행 내규

**제21조 (목적)** 이 내규는 대학원 학위청구자격시험에 규정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한 세부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2조 (응시자격)** 외국어 시험 및 종합시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.

1. 외국어 시험 : 석사학위과정 학생은 2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하고 6학점 이상 취득한 자,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3학기이상 정규등록하고 12학점 이상 취득한 자
2. 종합시험 : 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학생에 한하여 석사학위과정은 3학기 이상 정규 등록한 자, 박사학위과정은 4학기 이상 정규 등록한 자 (개정 2013. 3. 1)

**제23조 (응시절차)**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응시원서와 응시료를 기일 내에 대학원 교학팀에 납부하여야 한다.

**제24조 (시험일자)** 매 학기 중에 실시하며, 시험실시 2주전에 공고한다.

**제25조 (시험과목)**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.

1. 외국어 시험 : 전공영어 (개정 2015. 1. 26)
2. 종합시험 : 석사학위과정은 전공과목 중에서 3과목 이상으로 하고, 박사학위과정은 전공과목 중에서 4과목 이상으로 한다.

**제26조 (출제위원)** 벤처대학원장은 전조 각 과정 2인 이상 교수에게 시험문제의 출제와 채점을 위촉한다. (개정 2015. 1. 26, 2019. 3. 1)

**제27조 (출제 범위)** 외국어 시험 및 종합시험의 출제범위는 다음과 같다.

1. 외국어 시험 : 전공영어는 각 분야 연구 수행에 대한 적합한 수준 여부를 시험할 수 있는 범위에서 출제한다. (개정 2015. 1. 26)
2. 종합시험 : 전공영역과 연구방법에 대한 기본 지식과 능력을 판정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.

**제28조 (배점 및 합격기준)** ① 외국어시험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.

② 종합시험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하며, 과목별 합격을 인정한다.

**제29조 (합격자 발표)**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결과는 벤처대학원장이 대학원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인준을 얻어 합격여부를 확정하고 합격자를 발표한다.(개정 2019. 3. 1)

**제30조 (재시험)** 외국어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횟수에 관계없이 재 응시할 수 있으며,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학생은 차후 2회에 한하여 재 응시 할 수 있다.

## 마. 대학원 편입학에 관한 내규

**제31조 (목적)** 이 내규는 대학원 편입학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규

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32조 (지원자격)** 대학원의 각 학위과정에 편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.

1. 석사학위과정 : 국내·외 대학원에서 동일·유사 전공분야의 석사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하고 6학점 이상 취득한 자 (개정 2013. 3. 1)
2. 박사학위과정 : 국내·외 대학원에서 동일·유사 전공분야의 박사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하고 6학점 이상 취득한 자 (개정 2013. 3. 1)

**제33조 (전형방법 및 기준)** ① 전형방법은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에 의한다. (개정 2015. 1. 26)

② 서류심사는 다음에 각 호에 행한다.

1. 대학 및 대학원 성적
2. 그 밖의 학과별 전공에서 정하는 사항

③ 면접시험은 학술연구의 능력과 적성, 인성, 지원학과(또는 전공)와 관련된 분야에 해당하는 전문지식 및 응용능력 등을 심사하며 합격기준은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으로 한다. (개정 2015. 1. 26)

**제34조 (전형시기)** 편입학 전형은 년 1회 이상 시행 할 수 있으며, 그 시기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.

**제35조 (배점 및 평가)** <삭제 2015. 1. 26>

**제36조 (지원구비서류)** 편입학 전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소정 기일 내에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석사학위과정
  - 가. 입학 지원서(소정 서식) 1부
  - 나. 대학 졸업 증명서 1통
  - 다. 대학 및 대학원 성적 증명서 1통
2. 박사학위과정
  - 가. 입학 지원서(소정양식) 1통
  - 나.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증명서 1통
  - 다. 대학, 대학원 석사 및 대학원 박사과정 성적증명서 각 1통

**제37조 (학점 인정 및 편입학기)** 국내·외의 다른 학교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 인정 및 편입학기는 다음과 같다.

석 사		박 사	
편입학기	학점인정	편입학기	학점인정
2	6	2	6
3	12	3	12
		4	18

**제38조 (준용규정)** 합격사정, 등록 등 그 밖의 이 내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대학원 입학특별전형에 관한 내규 및 기타 관련내규를 준용한다.

## 바. 연구과정 및 공개강좌에 관한 내규

### 제 1 장 연구과정

**제39조 (연구과정)** 연구과정은 비학위과정으로 석사학위과정에 준하여 설치한다.

**제40조 (입학자격 및 입학시기)** 석사학위과정에 준한다.

**제41조 (입학지원 서류)** 연구과정에 지원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입학원서 1부
2.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 증명서 1부
3. 이력서 1부
4. 주민등록 초본 1부
5. 사진(명암판 상반신) 5매

**제42조 (입학 전형)** 연구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입학전형을 거쳐야 한다.

1. 서류 전형
2. 구두시험

**제43조 (수업연한)** 연구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하며, 1, 2학기로 구분한다.

**제44조 (휴학)**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하며, 1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.

**제45조 (복학, 재입학)** 연구과정 생은 이수한 동일학기에 복학 또는 재 입학할 수 있으나, 교과과정표에 의하여 개설된 이수 과목의 학점을 취득치 못하면 연구과정의 이수자로 인정할 수 없다.

**제46조 (제적)** 연구과정 생이 자격미달 혹은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일로 물의를 일으킬 때는 한시라도 벤처대학원장은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.(개정 2019. 3. 1)

**제47조 (등록금)** ① 연구과정으로 입학하는 학생은 매 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전항의 등록금액은 대학원 등록금의 9분의 6으로 하며, 입학금은 동일하다.

③ 연구과정으로 입학하여 재학 중에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경우에는 입학금은 면제하고 등록금만 납부하면 된다.

**제48조 (수료학점)** 연구과정생의 수료학점은 매 학기 6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으며, 년 12학점으로 한다.

**제49조 (학점인정)** 연구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을 대학원에 진학하여 인정받고자 할 때는 이수한 학점에 대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벤처대학원장이 이를 인정할 수 있다.(개정 2019. 3. 1)

**제50조 (연구실적 증명서)** 연구과정 생으로서 연구실적이 양호한 자에게는 연구실적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.

**제51조 (기타)** 기타 별도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석사학위 과정에 준한다.

## 제 2 장 공 개 강 좌

**제52조 (공개강좌)** 대학원은 교과과정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공개강좌를 열 수 있다.

**제53조 (공개강좌의 개강)** 과목 또는 제목, 기간, 수강인원과 장소 기타에 관한 사항은 개강시 이를 경정하여 벤처대학원장이 공고한다.(개정 2019. 3. 1)

**제54조 (공개강좌 수료증)** 공개강좌를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.

벤처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내규 1-4-1-6~6

본 학사내규는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본 학사내규는 200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본 학사내규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①(시행일) 본 학사내규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①(시행일) 본 학사내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①(시행일) 본 학사내규는 2014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①(시행일) 본 학사내규는 2015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①(시행일) 본 학사내규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①(시행일) 본 학사내규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